



1.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일반공급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2.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청약결과 1순위 가점제로(85㎡이하 예비당첨 포함) 당첨됨에 따라 가점제청약 오류여부(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당해거주기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3. 아래 명기된 부적격예상 사유검증과 관련하여 증빙자료 제출기한내에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판정여부에 따라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

※ 특히 “분리세대(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2월 8일(금요일)까지 사전 서류를 제출해야 정당계약일 전 부적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서류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방문이 어려운 분리세대에 한 해 팩스[(Fax 033) 244-6555]를 통한 약식 검증이 가능 하며(계약일 원본교체 필수)사전 서류 미 제출 시 부적격으로 인한 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① 부적격예상사유

- 가.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부양가족 수 오류
- 나.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오류
- 다. 당첨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기간 오류
- 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에 의한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 당첨자로 거주개시일 오류
- 마.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제한 및 부적격대상자
-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6항 제2호에 의거 가점제 제한사항 오류 등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일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② 가점확인서류 제출기한(모든 증빙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19.1.17부터)발행분에 한 함)

- 가. 확인기간 : 2019 . 1 . 31.(목요일) ~ 2019 . 2 . 12 (화요일) / 10:00 ~ 16:00 ※ 단 2019.2.4(월), 2019.2.5(화) 구정연휴로 견본주택 휴관 예정
- 나. 확인장소 : 춘천시 온의동 256-3번지 (Tel.1811-8001)
- ※ 반드시 계약전에 가점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사전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가점 확인 시 안내서류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가점 확인 사전 검증이 완료된 당첨자만이 계약진행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검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확인서류

- 모든 서류는 상세표기로 발급(과거 전입사항/세대주와의 관계/주소변동내역/세대원주민번호 뒷자리포함 발급 등)

필수서류 (신청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li> <li>- 주민등록등본 1통</li> <li>- 주민등록초본 1통(당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이상/부양가족 존속등재 시 3년 이상 확인, 만 30세 이상 비속 1년 이상 확인 가능해야 함)</li> <li>-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확인)</li> <li>- 출입국 사실 증명원 1통(2018~현재까지 내역 / 춘천시 3개월이상 당첨자에 한함 / 민원 24 또는 정부24에서 발급)</li> </ul>
추가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li> <li>-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분리세대)</li> <li>-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직계 비속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혼인여부확인)</li> <li>- 직계 비속 초본1통(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이상 확인 가능해야 함)</li> <li>- 무주택 소명자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li> <li>- 무주택 간주(소형·저가주택 등)를 증명하는 서류(60㎡이하, 8천만원 이하 두 조건 모두 충족함이 확인 가능해야 함)</li> <li>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단독주택가격확인원,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직계존속 초본1통(직계존속을 3년이상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19.1.17)
- ※ 18, 12, 11 규칙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필수로 포함하여 발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유의사항 (분리세대 필수)



1.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2.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청약결과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됨에 따라 청약요류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3. 아래 명기된 부적격 예상사유 검증과 관련하여 증빙자료 제출 기한내에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판정 여부에 따라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분리세대(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2월 8일(금요일)까지 사전 서류를 제출해야 정당계약일 전 부적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서류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방문이 어려운 분리세대에 한 해 팩스(Fax 033) 244-6555]를 통한 약식 검증이 가능 하며(계약일 원본교체 필수)사전 서류 미 제출 시 부적격으로 인한 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① 부적격예상사유

- 가. 당첨자의 혼인가간오류 오류
- 나. 당첨자의 자녀수 오류
- 다.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득상정 오류
- 라.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오류
- 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에 의한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 당첨자로 거주개시일 오류
- 바.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제한 및 부적격대상자 등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인서류 제출기한(모든 증빙서류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 후(2019.1.17부터) 발행분에 한 함)

- 가. 확인기간 : 2019 . 1 . 31 . (목요일) ~ 2019 . 2 . 12(화요일) / 10:00 ~ 16:00 ※ 단 2019.2.4(월), 2019.2.5(화) 규정연휴로 견본주택 휴관 예정
- 나. 확인장소: 춘천시 온의동 256-3번지 (Tel.1811-8001)
- ※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 받으시기 바라며, 사전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확인 시 안내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전 검증완료된 당첨자만이 계약진행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검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필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람)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19.1.17)
- ※ 18, 12, 11규칙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필수로 포함하여 발급
- ※ 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002,590원	5,846,903원	6,220,005원	6,625,810원	7,031,615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03,108원	7,016,284원	7,464,006원	7,950,972원	8,437,938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5,002,591원 ~ 6,003,108원	5,846,904원 ~ 7,016,284원	6,220,006원 ~ 7,464,006원	6,625,811원 ~ 7,950,972원	7,031,616원 ~ 8,437,938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30% 이하	6,003,109원 ~ 6,503,367원	7,016,285원 ~ 7,600,974원	7,464,007원 ~ 8,086,007원	7,950,973원 ~ 8,613,553원	8,437,939원 ~ 9,141,100원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 ~ 130% 이하)]를 선택하여야 함.
-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전년도 소득(17년)기준 소득을 적용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확인각서(견본주택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유의사항 (분리세대 필수)



1.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다자녀특별공급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2.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청약결과 다자녀특별공급에 당첨됨에 따라 청약요류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3. 아래 명기된 부적격 예상사유 검증과 관련하여 증빙자료 제출 기한내에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판정 여부에 따라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분리세대(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2월 8일(금요일)까지 사전 서류를 제출해야 정당계약일 전 부적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서류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방문이 어려운 분리세대에 한 해 팩스(Fax 033) 244-6555]를 통한 약식 검증이 가능 하며(계약일 원본교체 필수)사전 서류 미 제출 시 부적격으로 인한 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① 부적격예상사유

- 가. 당첨자의 미성년 자녀수(영유아) 오류
- 나. 당첨자의 세대구성(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오류
- 다. 당첨자의 무주택기간 오류
- 라. 당첨자의 해당시, 도 거주기간 오류
- 마.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오류
-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에 의한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 당첨자로 거주개시일 오류
- 사.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제한 및 부적격대상자 등

② 다자녀특별공급확인서류 제출기한(모든 증빙서류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 후(2019.1.17부터) 발행분에 한 함)

- 가. 확인기간 : 2019. 1. 31. (목요일) ~ 2019. 2. 12(화요일) / 10:00 ~ 16:00 ※ 단 2019.2.4(월), 2019.2.5(화) 규정연휴로 견본주택 휴관 예정
- 나. 접수장소: 춘천시 온의동 256-3번지 (Tel.1811-8001)
- ※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 받으시기 바라며, 사전 미 확인으로 인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확인 시 안내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전 검증완료된 당첨자만이 계약진행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검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필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19.1.17)
- ※ 18, 12, 11 규칙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필수로 포함하여 발급

1.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노부모특별공급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2. 귀하는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청약결과 노부모특별공급에 당첨됨에 따라 청약오류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3. 아래 명기된 부적격 예상사유 검증과 관련하여 증빙자료 제출 기한내에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판정 여부에 따라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분리세대(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2월 8일(금요일)까지 사전 서류를 제출해야 정당계약일 전 부적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서류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방문이 어려운 분리세대에 한 해 팩스(Fax 033) 244-6555]를 통한 약식 검증이 가능 하며(계약일 원본교체 필수)사전 서류 미 제출 시 부적격으로 인한 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① 부적격예상사유

- 가. 당첨자의 부양 가족 수 오류
- 나. 당첨자의 무주택기간 오류
- 다. 당첨자의 해당 시, 도 거주기간 오류
- 라.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오류
- 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에 의한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 당첨자로 거주개시일 오류
- 바.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제한 및 부적격대상자 등

② 노부모 특별공급확인서류 제출기한(모든 증빙서류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 후(2019.1.17부터) 발행분에 한 함)

- 가. 확인기간 : 2019 . 1 . 31 . (목요일) ~ 2019 . 2 . 12(화요일) / 10:00 ~ 16:00 ※ 단 2019.2.4(월), 2019.2.5(화) 구정연휴로 견본주택 휴관 예정
- 나. 확인장소 : 춘천시 온의동 256-3번지 (Tel.1811-8001)
- ※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 받으시기 바라며, 사전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확인 시 안내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전 검증완료된 당첨자만이 계약진행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검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필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	본인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경우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19.1.17)
- ※ 18, 12, 11 규칙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필수로 포함하여 발급